

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359호 2015. 6. 4. (목)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426호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정선군 조례 제2427호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정선군 조례 제2428호 정선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 7
- 정선군 조례 제2429호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4, FAX:560-2592)

조 례

제221회 정선군의회(2015. 5. 15.)에서 의결된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26호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현 청사의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정함----- -----.</p>
<p>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 ③ (생략) ④ 기금은 그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한다.</p>	<p>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p>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청사 건립 및 현 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한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 3. (생략) <신 설> 4. (생략)</p>	<p>제4조(기금의 용도) ----- ----- ----- -----. 1. ~ 3. (현행과 같음) 4. 현 청사의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 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2. (생략) ④ (생략)</p>	<p>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p>

개 정 이 유

-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청사건립 기금 조성
- 지역 여론, 부지 미확정, 예산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신청사 건립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상황
- 현재 민원인 및 관광객의 증가로 현 청사 주차장 부족은 물론, 청사 주변 교통 혼잡, 접촉사고, 민원야기 등 청사주변 환경정비 필요
- 청사건립기금의 용도 확대로 유연성 있게 기금을 운영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에서 “2020년 12월 15일”까지로 명확히 함(안 제3조제4항)
- 기금의 용도에 “현 청사의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 신설(안 제4조제4호)

제221회 정선군의회(2015. 5. 15.)에서 의결된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27호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계기”를 “열거”로, “군수”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②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⑥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u></p> <p>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p> <p>1. 징수관, <u>경리관</u>,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u>채무관리관</u>,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p> <p>2. 제1호에 <u>게기</u>된 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 <u>군수</u>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자</p>	<p><u>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u></p> <p>제2조(회계관계공무원) -----</p> <p>-----</p> <p>-----</p> <p>-----</p> <p>1. ----- <u>재무관</u>-----</p> <p>----- <u>부채관리관</u></p> <p>-----</p> <p>-----</p> <p>2. ----- <u>열거</u>-----</p> <p>----- <u>정선군수</u></p> <p><u>(이하 “군수”라 한다)</u>-----</p> <p>-----</p>

개 정 이 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의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명칭 변경(안 제2조)
 - 경리관 → 재무관
 -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
- 기타 문구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제221회 정선군의회(2015. 5. 15.)에서 의결된 정선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4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428호

정선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경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경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그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군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경관사업계획의 심의를 거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공공공간"이란 광장, 가로, 수변공간 등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8. "공공시설물"이란 버스승차장, 펜스, 휴지통, 표지판 등 공중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을 말한다.
9. "랜드마크"란 인공 또는 자연물로서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0. "색채"란 색상을 가진 개별적인 재료의 조화로운 사용을 통하여 형성된 소규모 혹은 광범위한 지역의 이미지를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주민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주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 및 기준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가. 권역별 경관 계획
 - 나. 경관 유형별 특성화 계획
 - 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 계획
 - 라. 중점 관리지역 경관 계획
 - 마. 랜드마크 형성 계획
 - 바.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 사. 건축물 디자인 계획
 - 아. 야간경관 계획
 - 자. 색채 계획
 - 차. 가로경관 계획
 - 카. 공원·녹지 계획
 - 타.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 계획
 - 파. 광고디자인 계획

- 하. 예술품 설치 가이드라인 계획
-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
-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제3장 경관사업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2. 호수·하천 등 수변공간의 경관개선사업
- 3.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의 기대효과
- 2. 연차별 집행계획
-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3. 경관 관련 전문가
- 4. 경관사업 시행자

5.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7.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결의한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협의체는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협의체의 회의는 본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되, 본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회의는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⑩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분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회의 시 분과위원장이 보고한다.

⑪ 협의체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⑫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⑬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2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문과 결정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하는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장 경관협정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 건물, 조경과 관련된 조명의 관리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협정의 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해당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5장 경관심의 및 자문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50억원 이상인 사업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 시설면적 3,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설비로 바닥에서 높이가 50미터 이상인 시설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제6장 경관위원회

제25조(구성·운영) 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경관위원회(이 조례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영 제25조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가.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 다.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때
2.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7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별표의 사업으로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제30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또는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경관관리 등에 관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처리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제28조제1호 관련)

구분	분류	대상	
도시계획	도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대단위 사업	가. 도시지역 1)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2)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3)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이상 나.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다.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이상	
공공공간	공공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체험시설	
	경관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사업	색채, 벽화, 조형물제작 등 단일 공종으로 사업비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	
	옥외광고 정비사업	30개소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는 옥외광고 정비사업을 위한 디자인 및 실시설계 사업	
	경관을 고려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연장 200미터 이상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	가로등, 도로명판, 보안등, 게시판, 장애인 유도사인, 안내표지, 맨홀, 경계석, 보도블럭, 벤치, 버스쉘터
		문화관광시설물	관광안내소, 관광안내도, 관광안내표지판, 동상, 기념비, 조형물, 표지판, 기념표석
건축물	건축물	폭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로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 정 이 유

- 「경관법」 개정(2013.8.6.), 같은법 시행령 개정(2014.11.19.) 시행에 따라, 시·군 조례 정하는 사항에 대한 반영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규정<신설>(안 제3조)
- 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주민의 책무 규정<신설>(안 제4조)
-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규정 개정(안 제6조)
- 경관계획 내용 개정(안 제7조)
- 경관사업의 대상 규정<신설>(안 제8조)
-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규정<신설>(안 제10조)
-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규정<신설>(안 제14조)
-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신설>(안 제23조)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규정 개정(안 제24조)
-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안 제25조)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안 제30조)

제221회 정선군의회(2015. 5. 15.)에서 의결된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4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429호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을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인자부담금”을 “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홍보비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인자부담금”을 각각 “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을 “변경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원인자부담금”을 “부담금”으로, “제6조 규정”을 “제6조”로, “산정기준”을 “그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인자부담금”을 “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원인자부담금”을 “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규정”을 “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이외”를 “외”로, “금액에 한”을 “금액에 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 방법에 의하여”를 “그 밖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한다.”를 “하되,”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금”으로, “중전의 부담금(분담금)”을 “이전의 부담금(분담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손괴로 인하여”를 “손괴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수로 인하여”를 “단수로”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제126조까지를 준용한다”를 “제126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로 한다.

제1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처음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 <u>원인자부담금</u> ”(이하 “ <u>부담금</u> ”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 다. (생략)	1. “ <u>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u> ”이란 ----- ----- ----- ----- -----.
2. ~ 7.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u>원인자부담금</u>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u>부담금</u>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u>원인자부담금</u> 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 ----- ----- <u>부담금</u>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홍보비</u> 등 기타	9. <u>그 밖에 홍보비</u>
③ <u>원인자부담금</u>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부과한다.	③ <u>부담금</u>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 (주차시설, 물류센터, 창고시설, 발전실, 통신실,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공장시설)의 면적. 다만,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장시설의 경우에는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된 시설
- 2. 제3항 제4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포함한 시설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 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부담금-----
-----.

- 1. -----

-----.

- 2.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
----- 부담금-----

제6조-----

----- 그 산정기준-----
-----.

② -----
----- 부담금-----

-----.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중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④ (생략)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⑥ (생략)

제8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수로 인하여 급수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영업손실과 수도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수도사용자에 대한 피해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③ -----

----- 하되,
----- 부
담금----- 부
담금----- 이
전의 부담금(분담금
을 포함한다) -----
-----.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
----- 손괴로 -----

----- 단수로 -----

-----.

②·③ (생략)
 제10조(이의신청)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의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다른-----

 ----- 제126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

제17조(시행규칙) ----- 시행에

 -----.

개 정 이 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개선과제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일괄 정비 권고” 통보에 따른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개선과제에 대한 행정자치지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15일 이내 → 30일 이내(안 제7조제5항)
- 용어 띄어쓰기 및 문구 수정